

『국세통계』 통계정보 보고서

2023. 12.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24.3.31.



차 례

I. 통계개요	1
1. 통계명	1
2. 법적근거	1
3. 작성방법	1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1
5. 작성 및 공표주기	1
6. 통계과정 개관	2
7. 통계연혁	2
II. 통계의 작성목적, 이용 및 이용자	3
1. 통계의 작성목적 및 활용분야	3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3
3. 이용자 의견수렴	3
III. 통계설계	4
1. 보고양식 설계	4
2.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9
3. 통계작성 개편	10
IV. 자료수집	11
1.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11
2. 자료수집을 위한 교육	11
3. 현장관리	12
V. 자료처리	13
1. 자료입력 표준화	13
2. 자료내검	13
3. 이상치 식별 및 처리	13
VI.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14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14
2. 시의성 및 정시성	15
3. 비교성	15
4. 일관성	16

VII.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17
1. 접근성 및 명료성	17
2.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17
3. 비밀보호 및 보안	17
VIII. 통계기반 및 개선	19
1. 기획 및 분석 인력	19
2. 자료처리 시스템	19
IX. 참고문헌	20
1.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20
2. 동일통계 외국자료	20
3. 기타 문헌	20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국세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통계작성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조사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개요, 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통계 결과 및 공표, 이용자서비스, 통계 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I. 통계개요

1. 통계명

- 국세통계

2.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 통계법 제18조 1항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33001호)

3. 작성방법

- 국세 신고 및 결정 등에 의한 세액을 취합 및 집계
 - 세목별 과세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총괄, 직접국세, 간접국세, 세목별 징수실적 등) 560종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국세청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5. 작성 및 공표주기

- 작성주기 : 연간
- 공표주기 : 연간(다음년도 12월)
 - 국세통계의 적시 제공을 위하여 생산 시기에 분기별 공개 4회 실시(3월, 6월, 9월)

6. 통계과정 개관

□ 일정별 업무처리절차(예시: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업 무 내 용	
매년 3~4월	수요조사 실시	-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편 또는 현장방문 수요조사
5월	조사결과 분석	- 이용자의 국세통계 수요조사 결과 분석
	기초자료입수 (raw data)	- 종합소득세 신고(5월 말까지, 성실신고자는 6월 말까지) 세무서, 홈택스(전자신고)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D/B화
5월~8월	소관부서 협의	- 국세통계 수요에 대해 소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생산 가능 여부 등을 분석
7월~8월	오류정정 등	- 종합소득세 신고서 오류 정정
9월~11월	자료 D/B화 및 분석	- 신고서 자료 D/B화 및 분석
	통계표 생산	- 소관부서에 생산 의뢰, 취합 후 보도자료 생산을 위한 통계 의미 분석
12월	국세통계 공개	- '국세통계연보' 공개 및 보도자료 배포

7. 통계연혁

□ 최초 개발 시기

- 1967년 국세통계연보 최초 발간
- 1976년 12월 7일 일반통계 작성 승인(제133001호)

□ 개발배경

- 국세의 세목별 징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세입구조 실태, 변동 등에 따른 대책 수립, 경제효과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국세 행정의 성과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현재 모습을 통계수치로 보여줌으로써 경제 정책 입안자, 조세재정 연구자, 일반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II. 통계의 작성목적, 이용 및 이용자

1. 통계의 작성목적 및 활용분야

□ 통계 작성목적

- 국세의 세목별 징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세입구조 실태, 변동 등에 따른 대책 수립, 경제효과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주된 활용분야

- 공공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등에서의 재정정책의 경제효과 분석 및 국민계정 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학교 등에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통계의 주요 이용자와 이용자 유형별 용도

-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 : 공공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 국민계정통계 작성, 경제효과 분석의 기초자료
- 대학교, 경제연구소 : 연구 및 학술 자료

3. 이용자 의견수렴

□ 이용자 의견수렴 내용 및 주요 결과

-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 등을 수집하여 통계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과 통계공개 확대에 활용(매년 4~8월 국세통계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
- 수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통계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
 - 일반인의 통계 이해를 돕기 위하여 「통계표 찾아보기」 색인과 국세용어를 쉽게 풀어 쓴 「국세통계 용어사전」을 수정·보완하여 홈페이지에 수록

Ⅲ. 통계설계

1. 보고양식 설계

1-1 개념 및 정의

□ 주요 개념 및 용어 정의

- 국세 :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로 구분되고,
 -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으며, 내국세는 다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으며,
 - 국가 자신이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와 대비됨
- 소득공제 : 각종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한 후 과세표준이 도출됨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산출세액은 각 세목별 과세표준에 해당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 당기순이익: 주된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익에 영업외 수익을 합하고 영업외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경상이익 또는 경상손실에 특별이익을 합산하고 특별손실을 공제하여 계산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또는 법인세차감전순손실에서 법인세 등을 공제한 금액
-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 가산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근로장려금: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소득,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주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급하는 금액
- 세무조정: 기업이익과 과세소득과의 차이는 조세정책상의 이유에서 생기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양자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양자간에 존재하는 차이 여하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의 산출기본은 기업이익에서 구해야 한다. 이렇게 기업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분류하는데, 결산조정(決算調整)은 법인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장부상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여야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하는 세무조정방법을 말하고, 신고조정(申告調整)이란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마친 다음 법인세의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稅務調整計算書)에만 계상

함으로써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방법, 즉 신고과정에서 기업회계상의 당기 순이익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사항과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사항을 가감조정함으로써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광의의 세무조정에는 신고조정 외에 결산 조정까지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신고조정만을 세무조정이라 한다.

- 익금산입: 익금산입이란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을 구성하는 대상 또는 요소는 아니나 세무회계상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수익, 즉 익금에 부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은 소득금액계산상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익금산입사항(益金算入事項)이다. 익금항목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므로 익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즉 세법상 익금항목을 회사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나, 세법상 익금항목을 회사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결국,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은 기업이익에 익금산입액·손금불산입액을 가산하고, 손금산입액·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게 된다.
- 손금산입: 세무회계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게 되며 이를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과 익금으로 귀속시킴으로써 기간손익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무회계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므로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즉, 자본환급에 의한 순자산의 감소요인도 아니며 영업거래에 의한 순자산의 감소요인도 아닌 것을 손비로 인정하는) 항목을 손금산입항목이라 한다.
- 익금: 법인세법상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익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뜻한다. 여기서 익금 불산입이라 함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손금: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익금불산입 항목을 말함)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손비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세법상 손금의 개념은 기업 회계상의 비용(또는 손비)과 같은 것이나 반드시 그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주요 개념, 용어에 대한 국내기준과의 비교

○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세무조정)

- 기업회계(국내기준)상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을 계산하는 것처럼 법인세법은 익금에서 손금을 빼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결손금)을 계산함
- 기업회계기준상 수익 및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손금과 유사하므로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간접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 함

결산서(기업회계기준)	세무조정	법인세법
수익 ¹⁾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 익금
(-)비용 ²⁾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 (-) 손금
당기순이익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당기순손실)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결손금)

* 1) 수익(revenues) : 기업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
 2) 비용(expenses) : 기업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

1-2 적용 분류체계

□ 통계의 수집과 집계에 적용하고 있는 분류체계 개요와 내용

- 성별, 연령별, 지역별·주소지별·납세지별, 업태별, 세목별, 지방청별, 과세표준 규모별, 자산종류별로 분류하여 수집, 집계
 - 성별: 남성, 여성
 - 연령별:
 - 종합소득세: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70세 이상
 - 근로소득세: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70세 이상
 - 양도소득세: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70세 이상
 - 종합부동산세: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70세 이상
 - 상속세: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 증여세: 10세 미만, 10세 이상, 20세 이상,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 부가가치세: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70세 이상
- 지역별, 주소지별, 납세지별: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기준
- 업태별: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기타(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 : 2007.12.28)을 근간으로 함)
- 세목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 지방청별: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 과세표준 규모별
- 자산종류별

1-3 보고양식 구성

□ 보고양식(항목)의 법령 규정 또는 자체 양식 활용여부

- 각 세목별 신고, 결정 보고양식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내부전산망에서 직접 자료를 추출하여 통계표를 만드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만든 양식을 활용
 - 법령양식 : 종합소득세 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외
 - 자체양식 : 주요세목 전자신고 현황(통계연보 15-3-1) 외

관리번호 -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역	거주지역코드

1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신고유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을 추계-단순을 비사업자

⑨ 기장유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2 환급금 계좌신고
(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채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3 세무대리인 ⑬ 성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⑮ 전화번호

⑯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확인 ⑰ 관리번호 - ⑱ 조정번호 -

4 세액의 계산

구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금액 ⑲			
소득공제 ⑳			
과세표준(⑲-⑳) ㉑		㉒	㉓
세율 ㉔		10%	㉕
산출세액 ㉖		㉗	㉘
세액감면 ㉙			
세액공제 ㉚			
결정세액(㉖-㉙-㉚) ㉛			㉜
가산세 ㉝			㉞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㉟			㊱
합계(㉛+㉝+㉟) ㊲			㊳
기납부세액 ㊴	㊵		㊶
납부(환급)할 총세액(㊲-㊴) ㊷	㊸		㊹
납부특례세액	차감 ㊺		
	가산 ㊻		㊼
분납할 세액 2개월 내 ㊽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㊷-㊺+㊻) ㊾	㊿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영수)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1-4 보고양식 변경 절차 및 변경 이력

□ 보고양식의 변경 절차나 방법

- 법령 변경의 경우는 각 세목별 법령(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식 변경이 가능
 - 신고서식 개정 시 기재부에 개정 건의를 하면 기재부에서 법령개정 추진
- 자체양식의 경우는 매년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각 소관과 통계생산 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 여부를 결정

2.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 보고사항

- 보고대상 : 국세통계로서 내국세에 관한 납세자의 신고와 부과 및 징수사무와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수집한 세무자료에 의하여 세목별 과세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을 작성한 것
- 통계작성대상 : 보고대상 일부를 통계로 작성
 - 국세와 관련된 보고사항 중 중요하고 정보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자료를 중심으로 통계로 작성
 -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서,
 - ①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개업일, 휴·폐업일, 업태, 종목 등 사업자와 관련된 세적정보
 - ②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소득금액, 결정세액, 공제·감면·비과세 금액 등 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신고정보
 - ③ 납세고지, 납기전 징수, 징수유예, 독촉, 압류·공매, 체납·결손처분 등 국세징수와 관련된 징수정보
 - ④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계획·집행·결과통보·사후관리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조사정보
 - ⑤ 기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하거나 관리하는 정보 등이 대상

□ 통계작성대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정·보완 방법

- 국세통계는 전년도에 소득, 거래 등을 집계한 통계로서 연중에 통계작성대상(예 : 세무서 신설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적(통계작성대상)으로 재집계하여 연간 통계를 작성

3 통계작성 개편

□ 국세통계 개편을 위한 수요도 및 만족도 조사

-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및 개선할 점 등을 수집하여 국세통계의 개편 및 지속적인 품질개선에 활용
- 방문조사 병행
 - 매년 4~8월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

□ 분기별 공개 실시

- 국세통계의 적시 제공을 위하여 생산가능시기에 분기별 1회 연보발간 전 공개 실시
 - 2009년부터 조기공개 1회, 2015년부터 조기공개 2회, 2021년부터 분기별 공개 실시
- 수요자가 필요로 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통계정보의 선제적 제공

IV. 자료수집

1.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통계작성 절차 흐름도(종합소득세 등)

기관	과정	업 무 내 용		시기
세무서	기초자료 (raw data)생산	1) 신고서 접수	- 납세자는 신고기간 동안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서(전자신고서) 제출	신고기간
지방청	기초자료(raw data)D/B화	2) 신고서 처리	- 신고서 내용 입력 등 전산처리	신고기한~ 15일
본청	내검 및 집계	3) 자료 구축	- 신고서 및 결의서 D/B 구축	7월~8월
본청	분석	4) 자료 분석	- 시스템 내 통계자료 구축	8월~9월
본청	생산	5) 통계표 생산	- (각 국, 실) 시스템 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보고 통계표 생산	9월~11월
본청	제공	6) 통계표 취합, 공표 및 서비스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보고 통계표 취합 및 점검 - 연보 발간 및 배부 - KOSIS 수록(익년 1~2월) 및 국세통계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9월~12월

자료 입수 및 점검

- 입수시기: 매년 5월 1일 ~ 6월 30일(종합소득세 등)
- 입수방법: 국세청 홈택스시스템 및 세무서 접수
- 점검내용: 신고서 구성항목별로 점검

2. 자료수집을 위한 교육

보고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 각 세목별로 교육 실시
-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교육(사이버교육센터)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중 상시 교육 가능

보고단계에 대한 의문사항 발생 시 조치 방안

- 내부시스템에 다양한 의문사항 조치방안이 마련되어 있음

□ 보고양식 변경 시 교육 실시 여부

- 매년 보고양식 변경을 포함한 세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세법개정 해설서를 발간하고 보고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3. 현장관리

□ 보고 완료시점 미준수에 따른 조치절차 및 방안

- 주요 세목별 보고 완료시점(신고납부 기한)

세목	보고완료시점(신고납부기한)	비 고
종합소득세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5월 1일~6월 30일
부가가치세	반기 다음달 1일~25일	간이사업자는 다음 연도 1월 1일~1월 25일
법인세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연도 3월 1일~3월 31일	3월 결산법인 : 6월 1일~6월 30일 6월 결산법인 : 9월 1일~9월 30일 9월 결산법인 : 12월 1일~12월 31일

- 보고 완료시점(신고납부 기한) 미준수(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무신고 결정
 - 처리지침(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 47조(가산세 부과), 제 47조의2(무신고 가산세)

□ 주요 질의 응답·오류사례 축적 및 관리 방법

- 주요 질의에 대한 응답은 전국 일선 세무서 혹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안내를 하고 있음
 - 전화상담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인터넷상담 : www.hometax.go.kr 접속(상담/제보)
 - 방문상담 : 제주 서귀포시 서호북로 36 국세상담센터
- 축적된 질의 응답·오류사례에 대해서는 상담 사례집을 발간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상담사례집 모음

□ 보고양식의 미기재, 부실기재 등이 있는 경우 처리 지침

- 보고양식의 미기재, 부실기재(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결정 고지
 - 처리지침(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 47조(가산세 부과), 제 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V. 자료처리

1. 자료입력 표준화

자료입력

- 자료입력은 지방청 단위로 집중 처리
- 자료입력과 관련하여 자체교육 실시

2. 자료내검

개별 자료 중 중복, 누락 등에 대한 확인 및 보완 방안

- 중복자료, 누락 자료에 대해서 전산적인 상시 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

입력 내검의 제반 단계, 방법, 오류자료 처리방법(현장내검은 없음)

- 국세청에 접수되는 신고자료에 대해서 오류 검증을 통한 내검 실시

3.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이상치가 식별되는 경우 정정 및 보완 후 처리

Ⅵ.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공표되는 내용

- 국제통계연보에 수록되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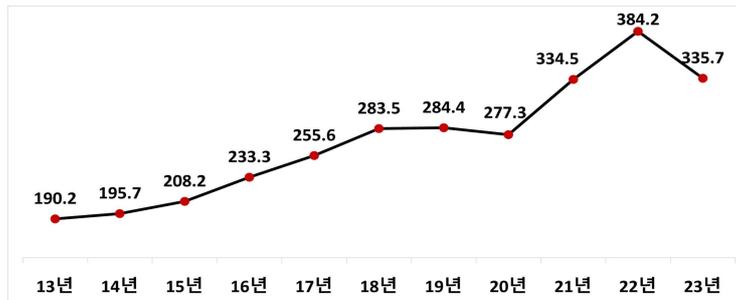
□ 공표자료의 주요 통계표 및 그래프 등

- 분석결과(예시: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구분	세수현황			전년대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세수(조 원)	334.5	384.2	335.7	14.9	△12.6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 2023년 국세청 세수는 335.7조 원으로 2022년 384.2조 원 대비 12.6% 감소

- 2023년의 경우 소득세가 115.8조(전년 대비 10.0% 감소)로 가장 많은 점유비(34.5%)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세 80.4조(전년 대비 22.4% 감소), 부가가치세 73.8조(전년 대비 9.6% 감소) 순

□ 통계표 등 이용 시 주의사항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 수치는 세부 항목과 합계를 각각 반올림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보고대상 기간/시점과 공표시기

보고대상 기간 및 시점

- 보고대상 기간: 1.1~12.31(1년)
- 보고대상 시점: 각 세목별로 보고시기가 상이함

공표시기

- (연간) 전년도 소득, 거래 등을 집계하여 다음년도 12월 말
 - 일부 생산가능한 통계는 연보발간 전에 분기별로 3월, 6월, 9월에 공개

2-2 공표일정

통계공표 일정 및 공표방법

- 사전에 계획 및 공개된 공표일정
 - 분기별 공개: 다음년도 3월, 6월, 9월 / 정기공개(연보) : 다음년도 12월
- 공표방법 : 국세청 통계홈페이지 공개
 - 국세통계포털(<http://tasis.nts.go.kr>) > 국세통계
 - * 공표일정은 공표 1~2개월 전 별도의 안내 문구를 통해 공지

공개된 공표 일정과 실제 공표시기

공표자료명	공표계획	실제 공표시기	KOSIS 서비스 여부
국세통계연보(2023년)	12.20.(수)	12.20.(수)	여

3. 비교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통계 작성방법의 동일 여부

- 통계 개념, 분류기준, 보고기준, 보고시기 등 주요 사항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

3-2 시계열 비교성

- 시계열 단절 없이 제공 중

3-3 국가간 비교성

□ 국세통계의 국제비교

- 각국의 국세통계
 -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가 재정, 세금과 관련하여 조세정책 및 연구 목적으로 국세와 관련된 통계자료(국세통계)를 생산, 관리하고 통계연보를 발간
 - 주요 국가의 국세 세수 현황 등은 OECD 자료 등을 통하여 국가 간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

4. 일관성

□ 국내 유사통계 또는 관련통계와 비교

- 기획재정부(www.mosf.go.kr)의 재정통계
 - 국가의 공공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을 통계화한 것으로서 4년 주기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및 결산, 통합재정수지 등을 주내용으로 특히 국세통계를 포함함
 - 재정통계에 포함되는 국세통계 : 국세수입실적,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등

□ 재정통계와 국세통계 간 차이

- 재정통계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생산하는 국세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통계이므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Ⅶ.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1. 접근성 및 명료성

1-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통계이용자 서비스 경로별 제공자료 유형

- 국세통계포털(<http://tasis.nts.go.kr>) : 통계 DB, 통계보고서, 보도참고자료
-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통계 DB, 통계보고서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 통계 DB, 통계보고서

1-2 통계 설명자료 제공 (작성개요~참고자료)

통계설명자료(통계메타 DB) 소재 정보

- 통계정책관리시스템(나라통계시스템, www.narastat.kr)>통계설명자료(<http://meta.narastat.kr>) > 기관별 설명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통계설명자료>기관별 설명자료>국세청>국세통계

2.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직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85조의6)

3. 비밀보호 및 보안

3-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자료 수집, 입력, 전송, 처리 및 보관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 조치

- 모든 과세정보는 외부망과 차단된 내부망 안에서 입력 등 처리가 되므로 원천적으로 해킹 등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과세자료가 유통, 보관됨

□ 자료 수집, 자료제공 및 보관용 전산자료 관리 시 비밀보호 규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한 비밀유지
 - 제1항: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통계사무처리규정 제22조에 의한 비밀보호
 - 제1항: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 비밀, 기업의 영업상 기밀 등 납세자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헌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및 제85조의6(통계 자료의 작성 및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등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 제2항: 통계관련 종사 직원 및 통계관련 종사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등에 의한다.
-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53조 외부인·외부기관 전자정보 제공

3-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식별가능성 제거를 위하여 취한 조치와 방법

- 공표자료는 해당 계급구간의 납세자 수가 적어 개별납세자의 신고현황이 식별 가능한 경우, 해당 계급 구간을 'u'로 표시하여 식별가능성을 제거함

3-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 보안 조치, 방법, 법령

- 자료의 반입·반출은 업무망을 폐쇄망으로 운영하고 있어 망간 자료전송시스템을 이용
- 관련 법령(규정):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정보보안업무규정, 통계사무처리규정 등

Ⅷ.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업무 담당 부서 및 담당인력(2024.01.29. 기준)

- 부서명: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 담당인력

직급	인원수	분장업무	현관서 전입일
4급	1	통계업무 총괄 등	2023년 12월
5급	6	통계 업무 등	2020년 4월 등
6급	5	통계연보 업무 등	2021년 1월 등
7급	2	국세통계센터 업무 등	2020년 3월 등
8급	1	통계 업무 등	2023년 1월

2. 자료처리 시스템

□ 시스템 장비, 소프트웨어 종류 및 사양

- 시스템 명칭: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

IX. 참고문헌

1.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 OECD 규정 참조(<http://www.cecd-ilibrary.org>)

2. 동일통계 외국자료

주요 외국 동일 또는 유사 통계

- 일본 국세통계연보(<https://www.nta.go.jp/publication/statistics/kokuzeicho/tokei.htm>)
- 스웨덴 국세통계연보(<http://skatteverket.se>)
- OECD 통계연보(<http://data.oecd.org/tax/tax-revenue.htm>)

3. 기타 문헌

최근 논문 및 관련 통계

제 목	인터넷 주소
(서울한국세무사회, 성명재)가계동향조사와 국세통계연보 비교를 통한 사업소득세 탈루 규모의 추정연구	http://www.nl.go.kr (국립중앙도서관)
(홍익대학교, 이상용) 근로장려세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http://dlps.nanet.go.kr (국회전자도서관)
(한국재정정책학회, 김우철) 조세지출의 추계와 재분배효과 분석	http://www.papersearch.net (한국학술정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업특성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https://www.nkis.re.kr (국가정책연구포털)